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이성순
(목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추진 흐름
 - 3.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3.2. 추진 흐름
4.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제
 - 4.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4.2. 추진 실제
5.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5.1. 연구결과
 - 5.2. 정책제언
6. 나가는 말

Ⅰ 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3여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흐름을 근간으로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일원화 방안이 요청되고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상응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셋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넷째, 지역에 기반한 이민행정 플랫폼형태의 외국인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자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 들어가는 말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인 1,956,781명으로 총 인구 51,638,809명 대비 3.7%이고 이 가운데 충청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62,578명¹⁾으로 총 체류 외국인 대비 4.5%에 달한다. 체류 외국인 1,956,781명은 등록외국인은 1,093,891명,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475,945명, 단기체류 외국인 386,945명이고 등록외국인 1,093,891명의 거주지역은 경기 360,412명(32.9%), 서울 226,569명(20.7%), 충남

1) 유학(D-2) 5,190명, 기술연수(D-3) 52명, 일반연수(D-4) 2,296명, 종교(D-6) 111명, 주재(D-7) 3명, 기업투자(D-8) 118명, 무역경영(D-9) 39명, 구직(D-10) 296명, 교수(E-1) 80명, 회화강사(E-2) 537명, 연구(E-3) 95명, 기술지도(E-4) 3명, 전문직업(E-5) 1명, 예술홍행(E-6) 22명, 특정활동(E-7) 611명, 계절근로(E-8) 11명, 비전문취업(E-9) 17,952명, 선원취업(E-10) 1,496명, 방문동거(F-1) 7,177명, 거주(F-2) 1,624명, 동반(F-3) 464명, 영주(F-5) 6,549명, 결혼이민(F-6) 7,168명, 기타(G-1) 2,075명, 관광취업(H-1) 3명, 방문취업(H-2) 7,363명, 기타 1,242명으로 62,578명임(법무부 2022: 978).

67,462명(6.2%),²⁾ 인천 66,364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등록외국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고 등록외국인 67,462명은 2021년 말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 2,119,257명 대비 3.2%의 비중을 차지한다. 충청남도의 등록외국인 62,578명(세종시 미포함) 기준 시군구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17,944명(28.7%), 아산시 16,373명(26.25), 당진시 5,112(8.2%), 서산시 3,854명(6.2%), 논산시 3,701명(5.9%) 순으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22: 24).

충청남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09년 3월 다문화가정지원조례 제정 및 다문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민족·다문화가정 종합지원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외국인주민으로 확대하였다. 충청남도는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충청남도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101과제(8,221백만 원)를 수행하였는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4과제(1,222백만 원),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69과제(5,820백만 원),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6과제(1백만 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21과제(1백만 원),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과제(4백만 원) 등으로 통합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였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22b).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지자체별 조례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의 중복되는 문제, 지역 특수성 제

2) 세종특별자치시 4,884명을 포함한 수치임.

고 부재 문제, 업무부서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과중의 문제 등 중앙부처의 비일원화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혼선과 증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3여 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결혼이민자, 동포, 중도입국자녀 등 체류 유형별 사회통합관련 연구로서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 전반의 흐름 분석과는 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흐름을 근간으로 2021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과 외국인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연구내용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근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분석은 부재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조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관련 연구에 있어 정명주(2012: 87)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상의 자원의 부족과 시책의 중복성, 정부조직간, 정부와 민간조직간 협의체의 부재 혹은 제한적 기능을 지적하였으며 박세훈(2011: 5)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킴으로 외국인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임형백·소진광·임경수(2012: 92), 광인신(2020: 109), 송석원(2011: 127)은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영국과 미국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권적·복지적 시각이 부각되었을 뿐 경제적·정책적 시각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지표의 설계와 일본의 공생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이 전제됨을 피력하였다. 곽영길·오세연(2010: 217), 김영근·조무현(2013: 307), 김영재(2020: 325)는 지방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중앙부처의 일방적·획일적인 정책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요구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책, 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이 요구된다고 피력하였다. 문성은·방은령(2012: 359)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결혼이민자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지원의 취약함을 지적하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가족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이 요청됨을 피력하였으며 강기정·변미희(2010: 49), 양문승(2012: 207)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의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정책대상자 중심의 다문화협의체 구성, 필수사업과 선택사업 외에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조석주(2007: 6), 김성배(2013: 146)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외국인정책의 수립, 지방분권적 사무 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정책의 재원 마련이 요구됨을 피력하였다. 김형수(2011: 267)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에 있어 중앙부처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특성화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성의 확보 외에도 민간위탁의 직영 전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기술하였다. 김동련(2012: 424)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해 통합관련 부서의 설치와 사무 이관, 외국인지원조례의 통합, 입법정책의 정비, 교육의 다양화에 관하여 피력하였다.

제도 및 조례에 관한 연구로서 김송이·박동진(2017: 181)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제정현황 분석을 통하여 자치구별 구청장의 책무, 지원범위, 협의회·위원회의 기능이 상이함을 지

적하고 다문화정책 및 제도 마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정회옥·박명아(2018: 5)는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주민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 외국인정책이 구체적이고 외국인근로자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결혼이민자 지원조례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정인(2018: 267)은 다문화가족 지원 근간이 지원조례와 지역주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자료와 업무계획, 충남 도내 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증장기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추진 흐름

3.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장은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제5조제1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①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②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방법과 시기,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2항).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6조제1항) 시행계획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별 계획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위임한 사무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중앙행

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제6조제3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각 회차별 정하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 해당 기간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황과 이슈, 지향점을 설계한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은 외국인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라는 비전과 4대 목표³⁾에 따른 중앙부처의 과제(예산)는 2009년 190과제(1,045억 원), 2010년 173과제(1,163억 원), 2011년 165과제(1,852억 원), 2012년 149과제(1,937억 원)가 수행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분야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면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반영하여 균형잡힌 정책기조 유지,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⁴⁾하에 2013년 194과제(4,983억 원), 2014년 207과제(5,002억 원), 2015년 209과제(1,490백만 원), 2016년 201과제(4,132억 원), 2017년 189과제(4,372억 원)가 각각 추진되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대상의 편중지원으로 결혼이민자와 재한외국인 지원의 형평성의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에 따른 가족동반 요구문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실행체계의 부족, 법질서 위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민자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제1차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년의 기간을 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의 활용,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기반 조성을 통

3)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등임.

4)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 공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 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임.

한 사회통합의 강화,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을 시사하고 비전과 목표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목표	중점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1-4. 유입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조성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18)

<표 1>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2018년 202과제(2,959억 원), 2019년 187과제(2,620억 원) 2020년 176과제(2,8651억 원), 2021년 170과제(3,061억 원), 2022년 168과제(3,233억 원)를 수행하였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체류 목적의 다양화,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부양비 증가와 같은 국내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

도화를 병행한 외국인정책,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정책,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제1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3.2. 추진 흐름

다문화정책의 근간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하며(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은 2007년 이후 공고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행정안전부는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시설 이용과 행정 혜택 등에 있어 거주 외국인을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고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한 외국인 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인의 날, 다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점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정책의 추진 주체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지자체,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여타 센터로 상호의존적이고 기관별 고유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총괄하고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를 포함한 이민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포함한 인력정책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거주외국인 대상 사업 수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미등록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등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별 주관부처를 분석하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8개 기관이며 2021년 기준 총 사업예산 306,147백만 원 예산 가운데 교육부 76,557백만 원(25.0%), 문화체육관광부 65,462백만 원(21.4%), 외교부 61,759백만 원(20.2%) 순이며 총 과제 170건 가운데 법무부 89건(52.4%), 교육부 14건(8.2%), 문화체육관광부 13건(7.6%) 순임을 알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주무 부서로서는 여성가족관련 부서가 주를 이루고 결혼이민자 가족 외에 거주 외국인 특성에 따라 국제협력부서와 경제·노동관련 부서, 농정관련 부서 등이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치행정, 사회복지, 주민지원 부서에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정책 부서에서 다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및 예산 현황은 <표 2>와 같다.

다문화정책의 추진 근거로서의 지자체별 조례는 분리조례와 통합조례로 크게 나뉘는데 분리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또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의미하고 통합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의미한다. 분리조례를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이고, 통합조례를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

주 등이다.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부서는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 특정 부서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통합업무를 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이고 둘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대상 분리업무를 하는 지자체는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북 등이며 마지막으로, 기존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세종시이다.

〈표 2〉 2021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부처명	2020		2021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예산
교육부	14	71,825	14	76,5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6,095	3	32,759
외교부	4	56,698	3	61,759
법무부	89	12,614	89	12,941
행정안전부	4	1,918	4	4,000
문화체육관광부	13	55,770	13	65,462
농림축산식품부	2	1,666	2	1,333
산업통상자원부	2	338	2	338
보건복지부	4	7,045	4	7,075
고용노동부	12	7,545	12	7,185
여성가족부	9	12,792	9	14,140
국토교통부	1	2,517	1	2,518
해양수산부	4	10,630	4	9,593
중소벤처기업부	1	6,000	1	6,000
방송통신위원회	2	1,868	2	1,868
통계청	1	2,226	1	2,314
경찰청	3	399	3	415
해양경찰청	3	비예산	3	비예산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21a)

4.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제

4.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45건 과제수행과 245,758 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01건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101건의 과제는 총 1,045건 과제 대비 9.7% 비율이고 예산의 경우 8,221백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245,758백만 원 대비 3.3%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1건의 과제는 공통과제 37건과 자체과제 67건으로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및 예산 현황은<표 3>과 같다.

〈표 3〉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추진과제	과제 수	예산
공통 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303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27	2,107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2	9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6	470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형적 거버넌스	1	4
소계		37	2,974
자체 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3	919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2	3,71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4	7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5	54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형적 거버넌스	0	-
소계		64	5,247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21b)

충청남도가 수행한 총 101건 과제의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지자체 54건(53.4%), 여성가족부 36건(35.6%), 이주노동자센터 4건(4.0%), 범

무부와 경찰서가 각각 2건(2.0%), 행정안전부, 경찰서, 도서관이 각각 1건(1.0%)임을 알 수 있고 공통과제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사업이 많지만 자체과제의 경우 지방비로 수행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별 추진 주체

구분	과제명	추진 주체							
		여성 가족부	행정 안전부	법무부	경찰서	교육청	도서관	지자체	노동자 센터
공통 과제	개방	1							
	통합	21	1	1	1	1	1	1	
	안전				1				1
	인권	2						3	1
	협력			1					
자체 과제	개방	1						2	
	통합	9						32	1
	안전							3	1
	인권	2						13	
	협력								
계		36	1	2	2	1	1	54	4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21b).

시행계획의 과제대상은 <표 5>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주민, 기관이고 총 101건 과제 가운데 대상별 과제 수는 결혼이민자 49건(48.5%), 외국인주민 31건(30.7%), 다문화가정 자녀 20건(19.8%), 기타 기관 1건(1.0%) 순임을 알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과제를 다문화가족 과제로 추산하면 다문화가족의 과제가 69건(68.3%)임을 알 수 있다.

〈표 5〉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제대상

구분	과제명	과제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주민	기관
공통과제	개방(1)	1			
	통합(27)	12	8	7	
	안전(2)			2	
	인권(6)	2	2	2	
	협력(1)				1
자체과제	개방(3)		1	2	
	통합(42)	20	10	12	
	안전(4)	1		2	1
	인권(15)	12		3	
	협력(0)				
계	101	49	20	31	1

충청남도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공통과제와 자체과제로 대분하고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대상별 과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대상별 과제

구분	과제명	과제 대상	과제내용	지자체
공통 과제	개방 (1)	결혼이민자 (1)	학습적응지원강화	금산군
	통합 (27)	결혼이민자 (12)	사회통합교육과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당진시
			취업지원 확대	천안시새일센터 보령여성인력개 발센터, 서산시, 금산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강화	보령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주거지 원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	천안시
			결혼이민자제도 개선 및	찬안시, 보령시

	다문화가정 자녀(7)	피해자 구제강화	자체계획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강화	천안시, 당진시	
		이중언어체계 고도화	당진시, 아산시	
		성장지원 강화 1, 2	금산군, 금산군	
		다문화유아 맞춤형 교육지원	천안시	
		다문화유아 맞춤형 교육지원	아산교육지원청	
		다문화유아 맞춤형 교육지원	아산시	
	외국인주민 (7)	전자민원 생활정보서비스 확충	아산시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제도 및 홍보 강화	아산경찰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	아산시, 금산군	
		외국인주민 민원서비스 지원	아산시	
		다국어정보 제공	당진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행정안전부		
	안전 (2)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지원	충남거점센터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제도 및 홍보 강화			금산군	
인권 (6)	결혼이민자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내실화	천안시 쉼터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서산시	
	다문화가정 자녀(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서산시	
		세계시민교육 지구촌문화엑스포	금산군	
	외국인주민 (2)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강화	아산시인권위원회	
민관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아산이주 노동자센터		
협력 (1)	기관(1)	중앙·지자체협업 및 교류강화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자체 과제	개방 (3)	다문화가정 자녀(1)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단계적 개발	아산시 교육청 소년과
		외국인주민 (2)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예산군
	외래관광사업 유치 활성화		아산시 팸투어	
	통합	결혼이민자	다문화어울림사업	충남시·군

(42)	(20)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공주시 읍·면·동주민센터	
		다문화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서산시	
		강사역량 강화	아산시	
		다문화신문 발간사업	서산시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우편요금지원	공주시	
		취창업지원 확대	아산시, 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분원 운영	아산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논산시	
		결혼이주민 자격증 취득지원	청양군	
		한국어교육	천안시	
		지자체 역할강화	당진시	
		다문화가족 언어상담지원	공주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공주시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부여군	
		다문화이주여성 방문교육 사업	보령시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홍성군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	아산시	
		지역 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아산시	
		다문화가정 자녀 (10)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논산시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인재양성 성장지원강화	충남거점 센터 금산군
	다문화청소년 성장프로그램운영		홍성군	
	다문화가정자녀 보조학습비지원		계룡시	
	다문화 끼·재능발현 프로젝트		충남거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청양군	
	다문화가정자녀 입학금 지원		부여군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부여군	
	중도입국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천안시	
	외국인주민 (12)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촉진	홍성군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길잡이	태안군	

		제작 배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충남거점센터
		이주민 도서관 운영	홍성이주민센터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 쉼터운영	충남 사)기빙트 리천사운동본부
		외국인근로자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충남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충청남도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 제작	예산군
		홈페이지 다국어 개설 운영	예산군
		지역사회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	아산시 정보통신과
		다국어 정보제공 확대	아산시 민원봉사과
안전 (4)	결혼이민자 (1)	다문화가족 이해와 체험 “따로 또 같이”	보령시
	외국인주민 (2)	한국어 외국인근로자반 운영	서천군
	기관(1)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당진시
인권 (15)	결혼이민자 (12)	다문화·다가족 어울림 대축제	태안군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당진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	아산시이주 노동자센터
		여성 및 아동인권보호 강화	충청남도
		논산시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	논산시
		다가족·다문화 어울림 대축제	충남거점센터
		문화다양성 추진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홍성군
		세계시민교육	충청남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아산시
		세계시민교육 지구촌문화속으로	금산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논산시
		결혼이민자 가정 모국방문지원	청양군

		외국인주민 (3)	이주민센터 운영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천안외국인력 지원센터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외국인 축제	천안외국인력 지원센터
협력 (0)				
계	101	49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21b) 재구성

총 과제 101건은 공통과제 37건(36.6%)과 자체과제 64건(63.4%)이고 공통과제의 경우 총 37건 가운데 개방 1건(2.7%), 통합 27건(73.6%), 안전 2건(5.4%), 인권 6건(16.2%), 협력 1건(2.7%) 등이고 과제대상의 경우 결혼이민자 15건(40.5%), 외국인주민 11건(29.7%), 다문화가정 자녀 10건(27.0%), 기관 1건(2.7%) 등이다.

자체과제는 총 64건으로 개방 3건(4.7%), 통합 42건(65.6%), 안전 4건(6.3%), 인권 15건(23.4%)이고 과제대상의 경우 결혼이민자 33건(51.6%), 외국인주민 19건(29.7%), 다문화가정 자녀 11건(17.2%), 기관 1건(1.5%) 등이다.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천안,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천안, 당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형) 13개소로 총 17개소이고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센터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2. 추진 실제

충청남도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상위법을 근간으로 2009년 7월 30일에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4월 15일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로 개정된 후 2012년 12월 31일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다문화관련 조례 및 관리책임부서 현황을 살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충청남도 시·군별 다문화 조례 및 관리책임부서

구분	조례명(제정 및 개정년도)	관리책임부서
천안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2009 제정)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20 개정)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13 제정)	복지문화체육국 여성복지과
논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2009 제정)	동고동락국 복지인권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제정)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2 제정)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공주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2007 제정)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1 제정)	여성가족과
서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2007 제정)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1 제정)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20 개정)	
보령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2007 제정)	자치행정과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제정)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6 제정)	사회복지과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13 제정)	가족행복과
홍성군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2009 제정)	여성복지과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9 제정)	가족행복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20 제정)	가족행복과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1 제정)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청양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2010 제정)	여성가족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2015 개정)	
서천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2012 제정)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2015 제정)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
금산군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2010 제정)	교육가족과
태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2019 제정)	가족정책과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반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부서에서 외국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유사한 부서와 협업 중임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정책팀, 청소년정책팀 등 5팀으로 편성되었고 가족다문화정책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지원, 다문화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다문화·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도 및 시·군 외국인 지원정책 총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외에 경제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추진중이고 15개 시·군 가운데 아산, 당진, 예산 순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의 협업부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산시의 경우 여성가족과, 환경녹지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행정안전국, 민원봉사과, 평생학습문화센터,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립도서관 등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고 다음으로, 당진시의 경우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에서, 예산군의 경우 행정복지국의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이 외국인주민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별표]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지원금 기준, [별지 서식]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 지원 신청서 포함.

5.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5.1. 연구결과

5.1.1. 중앙부처의 이원화된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제5조6)에 따라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19개의 중점과제를 설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다문화가족의 장기 정착지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5.1.2.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편성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는 총 1,215건으로 중앙행정기관 170건(14.0%), 지방자치단체 1,045건(86.0%)이고 예산은 총 551,905백만 원으로 중앙행정기관 306,147백만 원(55.4%), 지방자치단체 245,758백만 원(44.6%)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21: 27).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는 총 1,330건으로 중

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양행정기관 119건(8.9%), 지방자치단체 1,211건(91.1%)이고 예산의 경우 총 584,705백만 원으로 중앙부처 469,459백만 원(80.3%), 지방자치단체 115,246백만 원(19.7%)이다(여성가족부 2021: 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총 예산 가운데 44.6%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경우 총 예산 대비 19.7%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의 위임사무를 담당하지만 예산의 확보와 통합지원 체계의 부족으로 지역별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체류유형에 상응한 차별화된 정책수립 및 지원이 제한적인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1-2명의 인력이 기존의 주민 및 복지업무에 다문화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전담인력이 배정된 지자체의 경우에도 거주 외국인의 비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외국인주민 지원의 경우 지역별 부처지원형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지자체지원형의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충남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등이 운영되며 그 외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일회적 지원이 있다.

5.1.4. 지역기반 특성화 사업 부재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멘토링, 홍보 및 자원연계 등의 기본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족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조기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제고한 사업으로서 어울림사업, 센터별 1개의 대표과제 발굴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진행될 뿐 지역산업체의 특성상 거주하는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주민 대상 전략적 특성화 사업은 부재한 실정이다.

5.2. 정책제언

5.2.1. 중앙부처의 일원화된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보고서 또한 각 권으로 작성되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중복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부서와 외국인주민 지원부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 부서에서 양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이고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의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외국인근로자 대상 추가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일관된 기본계획의 수립이 전제되고 일원화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지자체별 지역기반형 실효적인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5.2.2. 외국인주민 및 과제 수에 상응한 예산편성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인 1,956,781명으로 총 인구 51,638,809명 대비 3.7%이고 이 가운데 충청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1,093,891명 대비 충남 67,462명(6.2%)(세종시 4,884명 포함)으로 경기 360,412명(32.9%), 서울 226,569명(20.7%), 다음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수는 총 1,045건이고 지자체별 과제 건수는 서울 103건(9.9%) 경기 103건(9.9%), 충남 101건(9.7%), 전남 92건(8.8%)임에 반하여 예산 규모를 보면 총 245,758백만 원 가운데 서울 38,161백만 원(15.5%), 경기 36,278백만 원(14.7%), 전북 27,677백만 원(11.2%), 전남 21,288백만 원(8.6%), 강원도 20,201백만 원(8.2%) 순이고 충남의 경우 8,221백만 원(3.3%)

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예산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와 수행 과제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예산에 있어 지자체별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비례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5.2.3. 인구정책으로서의 충남 외국인정책 수립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었으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인구정책과 유기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이민정책에 대한 담론이 부재하였고 2021년 1월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단순노무업종 인력난 대응과 우수인력 유치·정착지원 등의 외국인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3).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충청남도청 2020: 2)에 따르면 2017-2037년 추계기간 동안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5개 시·군에 출생아 감소, 사망자 증가로 인하여 자연감소가 확산되고 동시에 인구의 사회적 변동(전출·전입)이 시·군별 인구 증감의 변수로 작용하여 2037년까지 9개 시·군⁷⁾의 인구는 증가하고 6개 시·군⁸⁾의 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는 외국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입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통합과 공생을 위해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제고가 요청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담론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외국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7)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청양·홍성·예산·태안 등임.

8)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 등임.

5.2.4.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파악하고 지역의 통합역량 및 통합지표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지역에 수용 가능한 이민의 규모를 정하고 유입된 이민자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민자와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력하는 민간과 관료조직, 연구기관의 지역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민행정의 지역협력 거버넌스는 이민행정을 중앙부처 중심으로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민자를 유입하는 이민유도 행정에서부터 지역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한 이민질서 행정으로 민·관·학의 협력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아산시의 경우 6과, 5팀의 협업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이민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외국인주민 대상의 업무부서 가운데 일개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업무 외에 시민단체, 산업체, 자원봉사자 등과의 협력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5.2.5.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 발굴체계 마련

2021년도 말 충청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62,578명(세종시 4,884명 미포함) 가운데 동포는 26,487명(세종시 1,324명 미포함)으로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대비 42.3% 비중을 차지하고 출신국은 총 31개국이다. 동포의 출신국은 중국 17,068명(64.4%), 러시아 3,452명(13.0%), 우즈베키스탄 2,558명(9.7%), 카자흐스탄 1,473명(5.6%), 기타 1,936명(7.3%)임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22: 1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구현할 뿐 동포를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동포의 체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간으로 동포 지원정책 수립이 요청되는데 지원정책 수립시 지원목적, 지원 대상 범위,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

2021년 법무부 지정 11개 동포체류지원센터⁹⁾와 별개로 충남 도내

동포의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조사와 동포와 동포자녀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는데 시범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권역별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방안이 요청된다.

6. 나가는 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급변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 강화가 요구되고 장기체류 외국인을 사회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 정착 및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이민자 인권보호 및 문화 다양성 정책 강화가 요구되며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전제된다(김연홍·이성순 2020: 7).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충청남도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의 일원화된 통합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실효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일원화가 요청된다.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은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상응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956,781명이고 등록외국인 1,093,891명의 거주지역은 경기 360,412명(32.9%), 서울 226,569명(20.7%), 충남 67,462명(6.2%)(세종시 4,884명 포함), 인천 66,364명(6.1%) 순임을 알 수 있다. 지방자

9)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대전다문화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초록별교육사회적협동조합, 고려인마을, 너머, 다문화마을, 한중사랑교회, 한중교류협회, 한민족연합회 등임(법무부 홈페이지).

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수는 총 1,045건으로 서울 103건(9.9%) 경기 103건(9.9%), 충남 101건(9.7%), 전남 92건(8.8%)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총 245,758백만 원 가운데 서울 38,161백만 원(15.5%), 경기 36,278백만 원(14.7%), 전북 27,677백만 원(11.2%), 전남 21,288백만 원(8.6%), 강원도 20,201백만 원(8.2%), 충남의 경우 8,221백만 원(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외국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초래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한다면 외국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입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의 통합과 공생을 위해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제고가 요청되는데 특히, 실효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장래인구추계 및 인구별 증감에 따른 외국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에 기반한 이민행정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민선 6기(2014-2018)가 시작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과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통합추진팀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형 이주민 행정기반을 구축한 바 있으나 민선 7기(2018년) 이후 이주민 지원 추진체계의 경우 혁신보다는 담보상태로 다문화사회에 따른 외국인 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부서를 통합 혹은 분리·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충청남도에 체류하는 외국인 62,578명(세종시 4,884명 미포함) 가운데 동포는 26,487명으로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대비 42.3%를 차지하고 출신국 또한 31개국으로 집계되었으나 충남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지원할 뿐 동포 대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2021년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있어서도 충

남 소재의 센터가 부재한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근간으로 동포의 체류 실태조사 및 동포지원정책의 수립,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등의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기정·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비교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집 3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37쪽-51쪽.
- 곽영길·오세연(2010).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집 1호, 자치행정학회, 217쪽-238쪽.
- 곽인신(2020).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학논총〉 32집, 국제학연구소, 109쪽-146쪽.
- 관계부처합동(2021).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 김동련(2012).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423쪽-450쪽.
- 김송미·박동진(2017).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사회과학연구〉 33집 4호, 사회과학연구소, 181쪽-208쪽.
- 김성배(2013).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13집 3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9쪽-155쪽.
- 김연홍·이성순(2020). 중장기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다문화콘텐츠연구〉 33집,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7쪽-42쪽.
- 김영근·조무현(201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7집 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307쪽-326쪽.
- 김영재(202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평화학연구〉 21집 4호, 한국평화연구학회, 325쪽-348쪽.
- 김정인(2008).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지방정부연구〉 21집 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67쪽-292쪽.
- 김형수(2011).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26집 2호, 동북아연구소, 267쪽-288쪽.
- 문성은·방은령(2012). 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자치행정학보〉 26집 2호, 한국자치행정학회, 359쪽-384쪽.

- 박세훈(2011).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공간과 사회> 21집 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5쪽-34쪽.
-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12월호).
- 법무부(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송석원(201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한일비교연구. <아태연구> 18집 3호, 국제지역연구원, 127쪽-143쪽.
- 양문승(2012).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안협력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11집 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7쪽-232쪽.
- 여성가족부(2008).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21). 2021년도 시행계획.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천: 법무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천: 법무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천: 법무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22a).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천: 법무부.
- 외국인정책위원회(2022b).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과천: 법무부.
- 이성순(202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전: 한국다문화연구원.
- 임형백 · 소진광 · 임경수(201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지표 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집 1호, 한국지방자치학회, 77쪽-95쪽.
- 정명주(201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실태분석. <한국학연구> 41집, 한국학연구소, 87쪽-135쪽.
- 정회옥 · 박명아(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현대정치연구> 11집 1호, 현대정치연구소, 5쪽-43쪽.
- 조석주(2007).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활성화방안. <지방행정연구> 21집 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쪽-46쪽.
- 충남도청(2020). 2017-2037년 충청남도 시·군 장애인구추계 분석보고서.
- 법무부(<https://moj.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필자 소개

성 명 이성순

소 속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창의교양학부

주 소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신학관 A405호 [우편번호] 35349

전자우편 sslee@mokwon.ac.kr

| Abstract

A Study on Chungcheongnam-do's Multicultural Policy - Focusing on the 2021 Local Government Immigration Polic -

Lee, sung-soon
(Mokwon University)

2023. 1. 30. 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0, 00-00. This study analyzed the 2021 Chungnam foreign policy and derived tasks. First, a plan to unify the central ministry's foreign policy and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requested. Second, the budget should be drawn up to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number of task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policy in Chungnam as a population policy is requested. Fourth, a region-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platform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a system for identifying blind spots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should be introduced.

[Key words] immigration policy,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local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local government's immi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투고일 2023. 02. 03 / 심사일 2023. 03. 09 / 심사완료일 2023. 03. 16